

부산지방법원 2020. 5. 21 선고 2019가단312988 판결 [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1. 7. 16 선고 2020나49898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0. 5. 21 선고 2019가단312988 판결

전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

담당변호사 정희장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

담당변호사 석창목, 박경, 이경훈

8. I

9. J

10. K

11. L

피고 1 내지 6, 8 내지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숙

변론 종결 2020. 4. 23.

판결 선고 2020. 5. 21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, C, D, E, F, G, H, I은 각 경남 거창군 M 임야 16,308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, 18, 19, 20, 21, 22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160㎡(텃밭), 같은 도면 표시 19, 23, 24, 25, 21, 20,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69㎡(공지), 같은 도면 표시 22, 21, 25, 24, 26, 27, 28, 29, 31, 30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182㎡(텃밭), 같은 도면 표시 22, 30, 31, 32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부분 37㎡(대지), 같은 도면 표시 33, 34, 35, 36, 37,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마)부분 134㎡(공지), 같은 도면 표시 41, 40, 42, 43, 44, 15,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사)부분 20㎡(대지), 같은 도면 표시 80, 79, 78, 77, 76, 75, 74, 73, 44, 43, 42, 40, 39, 38, 36, 35, 8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아)부분 443㎡(구거)를 인도하고, 같은 도면 표시 37, 36, 38, 39, 40, 41,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바)부분 80㎡ 지상 석축을 철거하고, (바)부분 80㎡를 인도하고, 피고 J는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15, 44, 45, 46, 47, 48, 49,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자)부분 41㎡(대지), 같은 도면 표시 44, 43, 72, 71, 70, 69,

48, 47, 46, 45,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차)부분 163㎡(구거), 같은 도면 표시 72, 81, 82, 71,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카)부분 54㎡(텃밭)를 인도하고, 피고 F은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71, 82, 83, 68, 69, 70, 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타)부분 69㎡(텃밭), 같은 도면 표시 48, 69, 68, 67, 66, 65, 55, 54, 53, 52, 51, 50,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파)부분 159㎡(구거), 같은 도면 표시 49, 48, 50, 51, 52,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하)부분 26㎡(대지)를 인도하고, 피고 K, L는 각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14, 55, 56, 57, 58, 59, 60, 61, 13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')부분 22㎡(대지), 같은 도면 표시 55, 65, 64, 63, 62, 61, 60, 59, 58, 57, 56,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')부분 130㎡(구거), 같은 도면 표시 66, 84, 85, 86, 64, 65, 6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다')부분 58㎡(텃밭)를 인도하라(이하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해당 토지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그 부호를 사용하여 '이 사건 ○부분 대지'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고, 피고 B, C, D, E, F, G, H, I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경남 거창군 N 임야 10,036㎡의 공유자이며, 피고 J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경남 거창군 ○ 대 808㎡의 소유자이고, 피고 F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경남 거창군 P 대 907㎡의 소유자이며, 피고 K, L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경남 거창군 Q 대 915㎡의 공유자이다(이하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위 각 토지를 모두 합쳐 '이 사건 각 대지'라 하고,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그 지번을 사용하여 '이 사건 ○ 임야'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).

나. 부동산개발업자인 R은 2008. 8.경 및 2014. 10.경 이 사건 각 대지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였는데, 당시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각 대지 사이에 있는 자연계곡에 사방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지상에까지 석축을 설치하였고, 피고들은 R로부터 이 사건 각 대지를

전원주택부지로 분양받거나 그 분양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.

[인정근거]

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5 내지 8호증, 을가 제28, 29, 30호증(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지를 소유하면서 그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여 나무를 훼손하고 텃밭 등을 조성하거나 자연계곡에 사방공사를 하여 석축 등 지장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.

따라서 원고에게, 피고 B, C, D, E, F, G, H, I은 각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 중 (가)부분 텃밭, (나)부분 공지, (다)부분 텃밭, (라)부분 대지, (마)부분 공지, (사)부분 대지, (아)부분 구거를 각 인도하고, 이 사건 임야 중 (바)부분에 설치된 지상 석축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 J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 중 (자)부분 대지, (차)부분 구거, (카)부분 텃밭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 F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 중 (타)부분 텃밭, (파)부분 구거, (하)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 K, L는 각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 중 (가')부분 대지, (나')부분 구거, (다')부분 텃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이 사건 임야 중 (바)부분 지상 석축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

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·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,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, 권원에 의하여 부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(민법 제256조 후문), 반드시 그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증대를 위한다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(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다91848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지사장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임야 중 (바)부분 지상에 석축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

위 지상 석축은 R이 이 사건 각 대지와 이 사건 임야 사이에 위치한 자연계곡에 사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사실, 그 후 피고 B, C, D, E, F, G, H, I은 R로부터 그와 인접한 이 사건 N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분양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위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위 지상 석축 부분은 이 사건 임야 위에 설치된 공작물로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임야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·합체되어 있는 점, 위 지상 석축 부분을 철거할 경우 계곡 사면의 토사 붕괴 및 유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손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, 위 지상 석축 부분은 R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부합을 위하여 반드시 권원에 의하여 부속될 것을 요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위 지상 석축 부분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 또한 피고 B, C, D, E, F, G, H, I은 위 지상 석축 부분이 설치된 후 R로부터 그와 인접한 이 사건 N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분양받았을 뿐 이 사건 임야 중 (바) 부분 지상 석축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나. 이 사건 임야 중 (바) 부분 지상 석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

먼저, 이 사건 임야 중 (나) 부분 공지, (라) 부분 대지, (마)부분 공지, (사)부분 대지, (아)부분 구거, (자)부분 대지, (차)부분 구거, (파)부분 구거, (하)부분 대지, (가')부분 대지, (나')부분 구거에 관하여 보건대, 이는 그 현황이 공지, 대지 내지 구거로서 그 자체로 피고들이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다음으로, 이 사건 임야 중 (가)부분 텃밭, (다)부분 텃밭, (카)부분 텃밭, (타)부분 텃밭, (다')부분 텃밭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해당 부분을 현재까지도 텃밭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을가 제10, 12, 18, 19,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위 각 텃밭 부분은 현재 경작이 종료되어 공지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동건

별지